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5. 19 선고 2020가합503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이창헌, 한지영, 김학수, 김정범

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차종선, 진현덕

변론 종결2022. 4. 14.

판결 선고2022. 5. 19.

주 문

1. 피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게 별지2 채권의 표시 기재 배당금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는 2017. 5.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식품기업운전자금 2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같은 날 채무자회사의 보증의뢰로 채무자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22. 5.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증약정 제10조 제1항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채무자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범위로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환범위에 포함하여 정하고 있다.

나. 채무자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1) 피고는 2019. 12. 27. 채무자회사에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채무자회사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채무자회사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의 변제기를 2020. 1. 31.로 정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D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채무자회사는 2019. 12.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4041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채무자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신용보증사고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채무자회사는 2019. 11. 19.까지 위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C은 2020. 1. 14. 원고에 사고발생일 2020. 1. 10., 사고종류 당좌부도인 신용보증사고를 통지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20. 3. 3.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C에 182,019,3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대위변제한 위 돈 중 532,100원을 회수하였다.

3) 원고는 2020. 2. 7. 채무자회사에 대한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 비용(대지급금)으로 5,038,523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1) E조합은 2020. 4.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진행된 이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라 한다)의 경매절차에서 2021. 11. 17. 피고에게 79,412,98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

2) 한편 원고는 2021. 8. 26. 이 법원 2021카단10702호로 피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의 배당금채권에 대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1,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가 채무자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채무자회사에 대한 186,525,810원(= 대위변제금

182,019,387원 - 회수금 532,100원 + 대지급금 5,038,523원)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인 2020. 3. 3. 비로소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채무자회사는 2017. 5. 22.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채무자회사는 2019. 11. 19. 이후부터 대출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당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0. 3. 3.에 이르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 제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C 및 익산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이와 배치되는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익산시가 채무자회사에게 2019년도 토지 및 일반건축물에 관한 재산세를 부과할 당시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채무자회사 소유의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뿐이었다.

(2) 피고는 2020. 1. 6. 채무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7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채무자회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16억 9,0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20. 1. 31.로 하되 특약으로 채무자회사의 채무(E조합 12억 4,000만 원, 피고 2억 원, H 2억 5,000만 원)를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무자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근거한 채무자회사의 채무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1	E조합	1,496,400,000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2	원고	186,525,810	이 사건 구상금채권
3	C 주식회사	60,360,067	가압류 청구금액
4	I단체	442,324,815	가압류 청구금액
5	J주식회사	20,000,000	가압류 청구금액
6	C 주식회사	25,763,297	가압류 청구금액
7	I단체	145,992,020	가압류 청구금액
8	K	600,000,000	약속어음
합계	2,977,366,009		

(4) 채무자회사의 재무 상태는 2018. 12. 31. 전년도 대비 재고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 12. 31. 전년도 대비 외상매출금 및 장기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채무자회사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나, 그에 따른 매출원가도 함께 증가하였고, 2018년도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5)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 2020. 6. 30.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1,772,813,900원(= 토지 314,093,000원 + 건물 1,458,720,900원)이고, 채무자회사 소유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54,223,000원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무자회사가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적극재산 587,036,900원¹⁾, 소극재산 1,480,966,009원²⁾)에 있었고, 그 당시 채무자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채권의 공동담보가 될 만한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채권자인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 주어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자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3) 하고, 채무자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G의 소개로 채무자회사가 공장을 신축하는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다. 피고는 채무자회사가 채무초과 상태라거나 당좌부도를 맞게 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채무자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하고 이자 명목으로 대여 당일 1,000만 원을 받았다. 차용 당시 약정한 변제기가 대여일로부터 1개월 남짓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수준의 이자 약정은 사회통념상 과도히 고율로 약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피고가 채무자회사의 자금 사정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였다.

(2) 피고는 채무자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당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선순위근저당권자인 E조합의 채권최고액 1,49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만한 부분이 크지 않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3) 피고는 채무자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고 열흘 정도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인이 아닌 개인에 불과한 피고는 채무자회사가

E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인수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매매예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감안하면 채권 회수가능성을 염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범위 및 방법

가. 관련법리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에게 바로 배당금의 지급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채무자회사에게 별지2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성민

판사강경민

판사김은지

별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채무자회사의 근저당권설정행위 이후인 2020. 6. 30.기준

가액이나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에도 동일한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다만, E조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근저당권자로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담보채권액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12억 4,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한다[587,036,9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1,772,813,900 - 피담보채권액 1,240,000,000원 + 기계기구 가액 54,223,000원)].

2) C 주식회사, I단체, J주식회사의 가압류등기는 모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마쳐진 것이나 등기가 마쳐진 시점이 2020. 1. 23.부터 2020. 1. 31.사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 시점과 매우 근접한 시기인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회사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부담한 채무인 것으로 추인되므로, 소극재산으로 포함하여 산정한다[1,480,966,009원(= 원고 186,525,810원 + C 주식회사 86,123,364원 + I단체 588,316,835원 + J주식회사 20,000,000원 + K 600,000,000원)].

3) 피고는 변론종결 후 채무자회사의 근저당권설정행위는 공장 신축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자금 2억 원을 융통받고자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변론의 전 과정에서 채무자회사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피고의 기존 주장과 모순된다. 나아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공장 신축은 채무자회사의 사업이 아니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L이라는 별개 법인의 사업으로, 채무자회사가 소유한 공장(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매각하고자 하였던 사실, 피고는 채무자회사에 2억 원을 대여한 후 변제기가 도래하기도 전에 채무자회사의 사업운영에 필수적인 공장을 전부 매수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무자회사의 근저당권설정행위를 사업 계속을 위한 자금융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담보제공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